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마. 법무조합의 구성 등(제58조의22 및 제58조의31 신설)

법무조합은 10인 이상의 변호사(법조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3명 포함 10인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구성하고, 수임사건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하도록 함.

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 폐지 등(법 제59조 내지 제63조 삭제, 법 부칙 제6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를 폐지(제100조제4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를 폐지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1월27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김 승 규
법무부장관

◎法律 第7358號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

민사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세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 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

가 있는 경우

제195조제3호중 “대법원규칙”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46조제1항제4호중 “상여금·퇴직금”을 “상여금”으로 하고, 동항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28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제285조제1항중 “채무자는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를 “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 및 제5항중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을 각각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로 한다.

제2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

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2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①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써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90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88조제1항·제4항”을 각각 “제28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2조제2항중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을 “재판을 고지한”으로 한다.

제298조의 제목중 “가압류취소재판”을 “가압류취소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가압류의 취소판결 또는 취소결정”을 “가압류의 취소결정”으로 한다.

제299조제1항중 “집행한 가압류를”을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02조를 삭제한다.

제307조제2항중 “제284조 및 제285조”를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 제1항 내지 제4항·제6항·제7항”으로 한다.

제3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①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2조중 “변론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재판장은”을 “재판장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보전명령 사건·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법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

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②住宅賃貸借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③개인채무자회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중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1항제4호”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1항제4호·제5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개정이유

현행의 엄격한 채무자재산 조회요건을 완화하여 도피중인 채무자에 대하여도 재산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여 저임금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며, 부당한 가

압류·가처분에 대하여 간편한 방식으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허용(법 제74조제1항)

(1)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종료할 수 없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허용함.

(3)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다니는 악덕채무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용사회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생계비 관련 규정의 대통령령에로의 위임(법 제195조제3호,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1월간의 생계비 등은 실제적인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1월간의 생계비, 최저생계비,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와 관련

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 (3) 중앙행정기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금지(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 (1) 현행대로 일률적으로 근로자 급여의 2분의 1만큼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함.

- (3)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보장되어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의 초과부분에 대한 압류허용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 (1) 현행대로 고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급여의 2분의 1만큼만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2분의 1이 표준

가구생계비를 초과하여도 이를 채무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를 허용하도록 함.

- (3)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채무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보전처분결정취소절차의 간이화(법 제281조 및 제288조)

- (1)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데 많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2)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취소재판을 판결에서 결정으로 변경함.

- (3)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취소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